

의안 검토 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3.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건요지 : 따 로 붙 임
4. 검토의견 : 따 로 붙 임

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6년 11월 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예 순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06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 상한을 폐지하고, 경감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방안을 확대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심 교통난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교통량 감축방안을 이행하는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비율 상한을 폐지함(안 제5조제2항).
- 나. 교통량 감축방안별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에 승용차요일제를 추가함(안 별표 1).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되는 조항을 수정하고 도심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통량 감축방안을 유도하고자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제4호, 안 제4조, 안 제5조제1항, 안 제13조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 함.
-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상한을 폐지 함.
- 안 별표1에서는 교통량 감축방안 경감비율 조정 및 이행기준을 추가로 규정 함.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2006. 6. 29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위임한 교통량 감축방안을 이행하는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비율 상한을 폐지하고 교통량 감축방안별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에 승용차 요일제를 추가로 규정하여 기타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 교통난 완화를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상한 폐지와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